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홍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45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성홍제 의원(1명)
찬성자: 김경,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수빈,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성배,
이영실, 임규호, 한신,
허훈, 홍국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하천변, 공원, 일반도로 등 다양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왔으나, 현행 조례는 여전히 도로 인프라 중심의 설치에 머물러 시민 생활권과 여가·경관을 고려한 종합적 자전거 인프라 조성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2009년에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자전거도로의 설치' 조항은 당시 도시개발 중심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의 생활권 중심·친환경 교통 여건에는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한강 및 불광천 등 하천·공원형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도심 일반도로와의 연계성,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등을 반영한 설계 기준도 여전히 미비함.
-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재된 구간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이 필요함.
- 이에 하천·공원 등 녹지 공간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동선 분리 설계 원칙을 신설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도로 설치 시 기존 도시개발 중심의 설치 기준 외에,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 · 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설치 방안을 추가함 (안 제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나.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5.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①</p> <p>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①</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u> <u>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u> <u>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u> <u>자전거도로 설치 방안</u></p> <p>5. <u>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u> <u>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선 구</u> <u>분 및 분리 설계 방안</u></p>
<p><u><신 설></u></p>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부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설계 시 주변 토지환경 및 보행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참고자료로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첨부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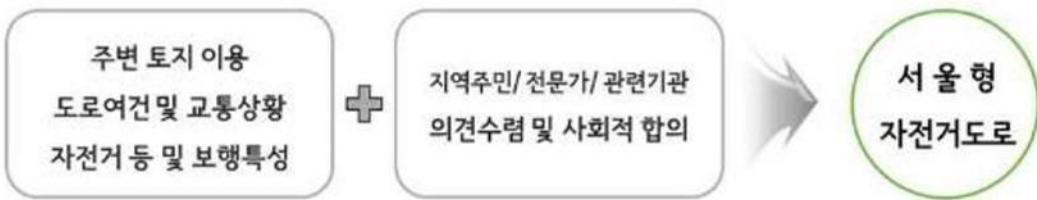
제2장 설계 기본사항

2-1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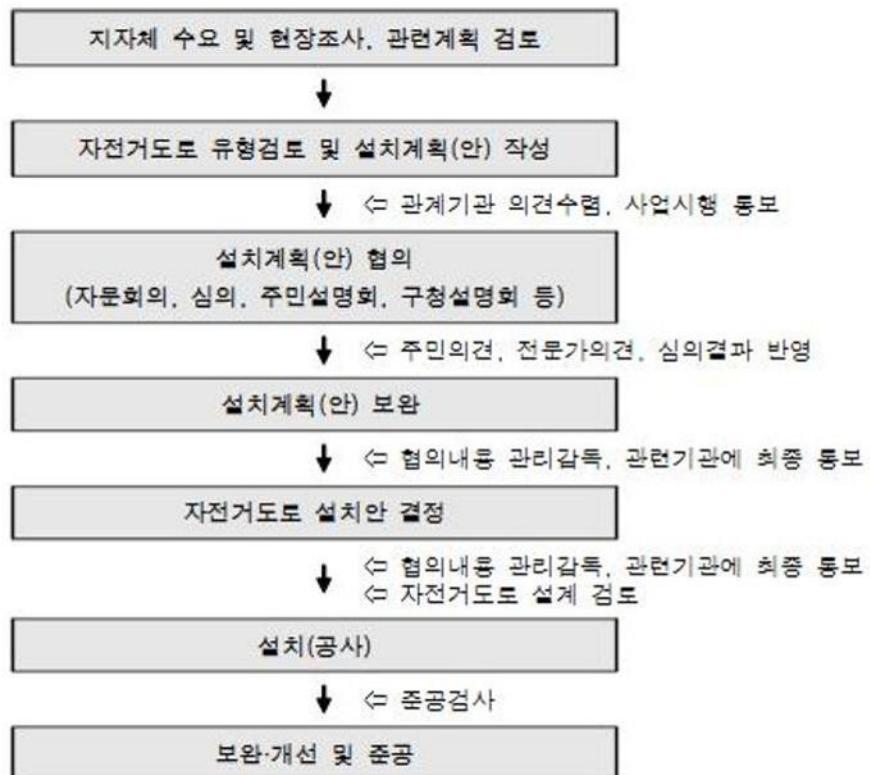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등으로 안내하여 보행자, 자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물리적인 경계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노면표시로 자량과 자전거등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등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으로 규정되었다.
 -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정의하였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그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 관리해야 한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라 함은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특성인 주변 토지이용,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자전거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제고하고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치·개선된 자전거도로를 의미한다.



<그림1> 서울형 자전거도로 개념



<그림2>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사업추진 과정

〈표 2〉 자전거도로의 종류

분류	종류	내용
기능별	간선자전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간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상에 설치 생활권간의 연계기능
	지구자전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내의 보조간선 또는 짐산도로에 설치 권역내의 통행을 담당 자전거교통의 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
구성별	자전거 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
	자전거·보행자 결통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외에 보행자 통행 가능
	자전거 전용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
	자전거 주선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 및 차도를 지정한 것으로서 자동차 통행 가능
통행 목적별	생활교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근, 통학, 업무, 쇼핑 등을 위한 생활교통 자전거도로
	레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미, 여가 및 스포츠에 이용되는 자전거도로
이용 형태별	직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에서 환승목적지까지 보조교통수단으로 이용
관리 주체별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8조~16조를 따름
	농어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를 따름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법 제8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를 따름

-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유형은 기존 법규상의 유형 구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의 통행특성, 통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분류하였으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4〉 첨단구성에 따른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유형

구분	세분류	특 징	비고
1) 자전거 전용도로	(1) 독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통행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도로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주간선축을 형성하며, 장거리 통행 및 여가활동에 이용 	분리 시설 없음
	(2) 차도높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에 분리시설(연석, 펜스, 안전휀 등)을 설치하여 률리적으로 차량과 분리한 도로 	분리 시설 있음
	(3) 보도높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또는 차도의 일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차량이 침범할 수 없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형태 보도에 분리시설(식수대, 화단, 펜스 등)을 설치하여 률리적으로 보행자와 분리한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 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에 노면표시 또는 마감재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시각적으로 분리한 도로 전체적 공간은 겸용하되, 이동동선 및 통행도로 보행로와 분리 	분리 시설 없음
	(2) 비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만 전용도로 설치 등 별도의 공간 확보 및 통행도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설치 	
3) 자전거 전용차로	(1)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에 노면표시(차선포함) 등을 설치하여 차량과 시각적으로 분리한 도로 노면표시 외에 표지병, 사고석 포장 등을 통한 입체적인 분리시설 보완 	분리 시설 없음
	(2) 갓길주차 허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 주차를 허용한 도로 갓길주차공간과 보도 사이에 설치되는 형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도로(도로교통법의 차도상 자전거 통행방법과 유사)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 	분리 시설 없음